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에서는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통신사업자 시험·인증을 통한 지역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2) 대 표 : 남유진

(3)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4) 출연예정액 : 금2,000,000천원(도비 600,000천원, 시비 1,400,000천원)

※ 3차년도('17. 6월 ~ '18. 5월) 소요예산 중 시비 매칭 금액

나. 주요 사업

(1) 사업명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2)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20년 5월 (5년간)

(3) 사업위치 :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4) 총사업비 : 420억원 [국비(지특)220, 도비30, 시비70, 민자100]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420	50	130	120	65	55
국비	220	20	65	85	30	20
도비	30	6	6	6	6	6
시비	70	14	14	14	14	14
민자	100	10	45	15	15	15

(5) 추진주체 : 미래창조과학부, 경상북도, 구미시

(6)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7) 사업내용

-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 시험인증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통신사업자(Nokia, China Mobile, Verizon 등) 대상으로 국내 최초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 글로벌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해외에서 인증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국내 인증 대행 서비스 제공

(8)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5. 2 : Alcatel-Lucent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
- 2015. 3 : ‘K-ICT 전략’ 중 스마트 디바이스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2015. 6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1차년 협약 체결
- 2015. 8 : China Mobile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
- 2016. 5 : Nokia 2G, 3G 인증장비 구축 완료
- 2016. 6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2차년 협약 체결
- 2016. 8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개소식
- 2017. 2 : Nokia 및 China 4G 인증장비 구축 예정

다. 출연의 필요성

- (1)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인증랩 구축을 통한
스마트 기기, IoT 단말, 국산 네트워크 장비 시장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사업자 전용 인증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2) 국내 최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
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
외통신사업자 전용단말 시장진출 기회 제공 및 시장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 제22조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6)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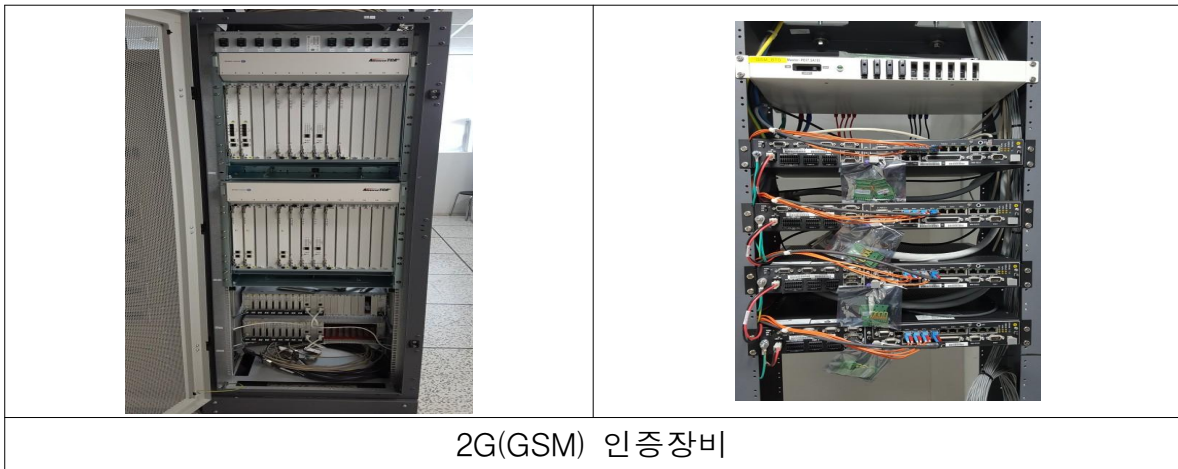
라. 기 타 : 주요사업 실적

주요사업 실적

□ 기반조성사업(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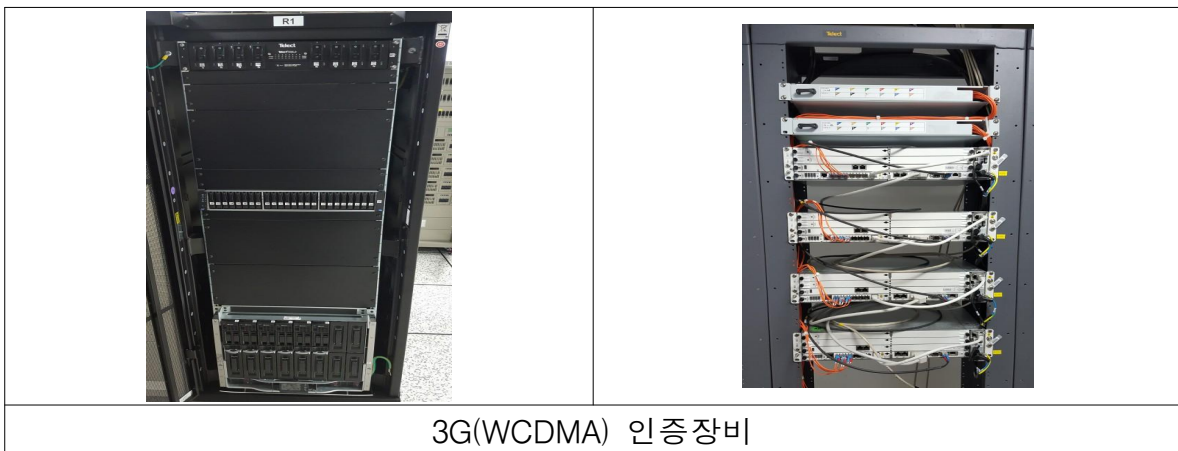
○ Nokia 2G(GSM) NV-IOT System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2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6년 5월, 구축금액 : 866,503천 원



○ Nokia 3G(WCDMA) NV-IOT System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6년 5월, 구축금액 : 965,211천 원



○ 인증랩 전용공간 구축

- 용도 : 인증장비 운영 및 설치, 인증시험

		
운영실	전용공간	차페실

○ 인증기술교류회 개최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유관기관 초청 발전방향 기술세미나('16. 3월)
- 중국 통신사업자 인증기술 세미나('16. 4월)

○ MOU체결

- Alcatel-Lucent 인증랩 구축 MOU 체결('15. 2월)
- China Mobile 인증랩 구축 MOU 체결('15. 8월)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개소식('16. 08. 29)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 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법률·회계·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업체 운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

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유익수
	담 당	권기열
	담 당 자	이지영 (480-6143)